

군산신역세권 A-2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입주자격완화 · 동호지정 · 선계약후검증 · 계약금50만원]

[모집공고일 : 2021.11.10]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 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국민임대 신청 안내] 및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필요시 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입주자격완화 주요내용]

■ 소득·자산 보유기준 완화 [소득요건·총자산요건 적용 배제]

※ 자격완화 입주자는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재계약 만료시 완화 전 요건(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추가로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입주자 모집공고 주요사항 요약

금회 모집은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당일 계약체결**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先(선)계약 後(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가**능합니다.

※ 아래 사항은 금회 모집에 관한 요약 내용이오니, 공고문 본문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 '21.11.29(월)~11.30(화) 10: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동호지정 및 접수 가능시간 : 10:00 ~ 12:00

* 계약 가능시간 : 10:00 ~ 16:00

* 공급형별 모집호수 도달 시 접수마감하며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 **선착순 계약 첫날은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충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시 이후 도착자는 접수 불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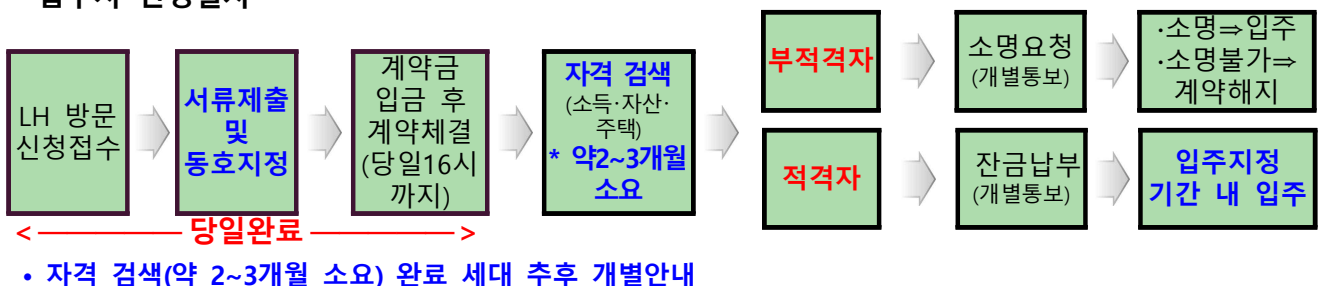
* 10시 이전 도착자는 도착시간 관계없이 동등한 순번으로 간주하여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서를 결정합니다. (예시) 09:00 도착자, 09:59 도착자 모두 10시까지 대기 후 추첨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 신청장소 : LH전북지역본부 본관 4층 주거복지사업2부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당일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절차(동호지정, 선계약 후검증)

* 입주자 선정절차



[동호지정 순번 결정 방법]

10:00 이전 도착자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동등한 순번으로 간주하여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서를 결정하게 되며, 추첨은 접수대장에 이름을 작성한 순으로 진행됩니다.
10:00 이후 도착자	도착순서대로 번호표를 받게 되며, 10시 이전 도착자의 동호추첨이 끝난 후번호표 순서대로 동호지정이 이루어집니다.

[동호지정 및 계약 방법]

- 동호지정은 모집기간 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오전 10시 이전 도착자는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10시에 추첨을 통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
- **12시 이후 도착자는 동호지정 및 접수가 불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 순번이 호명되면 해당 순번자는 지체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 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해당순번 호출시 3회 이상 호명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지체없이 후순위 순번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지난 순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번호표를 새로 배부 받아 순번에 맞게 진행하여야 함)
- 한번 선택한 동호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계약시 지정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해당 동호는 익일에 재공급합니다.
- 동호지정을 완료한 후 **당일 오후4시까지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 해야 하며, **방문계약만 가능**(온라인계약 불가)
-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주택소유 여부, 소득, 자산 등)을 검증하여 적격한 경우에 입주자로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됩니다.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계약) 준비사항 (미비시 신청 및 계약 불가)

- ① **계약금 - 50만원**(당일 안내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므로 계약금 이체가 가능한 상태에서 방문, **현금납부 불가**)
*계약체결시 입금영수증(또는 이체확인증) 제출
- ② 본인(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공통 제출서류,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제출 - '5.신청서류' 확인

■ 입주자격 완화 주요 내용

- ① **소득요건 배제**
- ② **자산요건 배제**,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3,496만원 이하 일 것**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계약시 주택, 소득·자산, 자동차 소유관련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정상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완화자격**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요건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6. 유의사항 참고), 재계약 만료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1. 건설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돌끝로 52 국민임대주택

2. 신청·계약 절차 및 입주안내

신청접수기간(동호지정·계약) : '21.11.29(월)~11.30(화)

***동호지정 : 오전10시 ~ 오후12시(12시 이후 도착자 접수불가)**

***계약체결 : 동호지정 당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모집인원 충원 시, 사전 마감)

소요 기간	절 차	장 소	상세 내용
	신청(계약) 서류 준비	각 서류별 발급처	· 자세한 구비서류는 '5.신청서류' 참조 ※ 서류미비시 계약불가
당 일	신청서작성/서류제출 * 서류구비 후 방문	LH전북지역본부 본관 4층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① 동호지정 순번 결정 · (10시 전 도착자) - 접수대장 작성 후 순번 추첨 · (10시 이후 도착자) - 도착순서대로 순번호 배부 ② 구비서류 제출, 청약신청서 등 작성
	선착순 동호지정		오전10시~오후12시 · 순번에 따라 잔여세대 중 계약을 희망하는 동호 지정
	계약금 납부	무통장·은행·PC·모바일 이체 (현장납부 불가)	· 안내받은 계좌번호에 계약금 50만원 입금 (입금자:계약자명 기재) ※ 계약금 미납시 계약불가, 현금납부 불가
	계약 체결	LH전북지역본부 4층 주거복지사업2부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 오전10시~오후4시(12:00~13:00 제외) · 계약금입금사실 확인 및 서류완비시 계약가능 ※ 동호지정 당일만 계약체결 가능
약2개월	자격 검증		· 신청자의 입주자격 적격여부 확인
약 2주	부적격자 소명		·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 소명 ※ 소명 불가시 입주 불가능
	입 주		·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입주안내 예정 · 입주안내 후 입주지정기간은 1개월

- * **공급형별 모집호수 도달시 접수마감하며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 등)을 검증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1.10) 현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 소득, 자산기준 등)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자격검증 등으로 인하여 입주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대상자는 **1개월의 입주지정기간**이 부여되며, 입주안내를 받았으나 **입주를 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21.11.15(월)~11.26(금)**동안(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단지 내 **샘플하우스**를 개방하오니, 계약 전 세대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10:00~16: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내에(주말·공휴일 제외/ 신분증 지참) 방문 바랍니다. **동호지정·선계약 후에는 동호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신 후 동호지정 하시기 바랍니다.

3.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별	세대 당 계약면적(m²)					해 당 동	건설 호수	금회 공급 호수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구 조 및 난 방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 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기타 공용	주차장					계	계약 금	잔금					
33	33.60	17.3376	2.2243	10.1372	63.2991	701 702	272	155	8,343	500	7,843	133,900	(+) 14,000	22,343	63,900	복도식 / 개별난방 / 벽식
33A (주거약자)							28	25					(-) 4,000	4,343	142,230	
46	46.28	23.8805	3.0637	13.9628	87.1870		104	15	20,497	500	19,997	186,430	(+) 16,000	36,497	106,430	
46A (주거약자)							16	12					(-) 14,000	6,497	215,590	

- 군산신역세권 A-2블록은 **국민임대주택(420세대)**, 행복주택(400세대)의 혼합단지입니다.
- 금회 공고는 **미계약[재임대세대 및 샘플하우스 포함]된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모집호수는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3A, 46A형**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시 이율 2.5%로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자격검증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입주안내 예정입니다.

4.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 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제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 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①, ②, ③에 해당하는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 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중증장애인 확인서 상 중증장애인 표기가 되어야 함**).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기본자격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90% 이하)		참고사항
		1인가구	90%	2,692,468원 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9인 이상의 가구는 추가 1인 당 8인가구의 월 평균소득기준액에 269,063원(완화조건 576,564원)을 합산하여 산정
		2인가구	80%	3,650,028원 이하	
		3인가구	70%	4,368,364원 이하	
		4인가구		4,965,943원 이하	
		5인가구		4,965,943원 이하	
		6인가구		5,175,553원 이하	
		7인가구		5,444,616원 이하	
		8인가구		5,713,679원 이하	
자산	총자산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92백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완화자격

- ① **소득요건 배제**
- ② **자산요건 배제**,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3,496만원 이하 일 것**

-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

	부채 (총자산 산정시 자산 합계금액에서 차감)	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5. 신청서류-모집공고일(2021.11.10.) 이후 발급분

모집공고일(2021.11.10)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서류는 **모집공고일(21.11.10)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계약 관련 필수 서류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접수가 거부됨	공사양식 · 신청자작성	1통
금융정보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첨)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첨)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공사양식 · 신청자작성	1통
확약서 (별첨)	선계약후검증 입주관련 확약서 입주자격 완화 관련 확약서	공사양식 · 신청자작성	각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세로 발급)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주민센터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상세로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주민센터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주민센터	1통

■ 신청자격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센터	1통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 (별첨)	• 예비신혼부부인 경우에만 제출	• 공사양식	1통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입양관계증명서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단독세대 예외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입양관계증명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주민센터	1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초과 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불가	· 주민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지사	1통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1통

6.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자격완화 사항	- 자격완화 내용 ① 소득요건 배제 ② 자산요건 배제,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3,496만원 이하 일 것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10.23) 내용을 반영하여 자격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임대대상 및 조건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비율은 현재 6%(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에는 2.5%)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소득및자산 초과자)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에 따른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완화 입주자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재계약을 1회에 한해 허용하되 재계약 만료 시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 1회 재계약 허용합니다.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모집 또는 신청 당시 단독세대주가 아니었으나, 신청 또는 입주 이후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갱신시 1회 퇴거유예 확인서와 전용 40㎡이하 예비입주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동일단지 예비입주자 최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고 순번 도래시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 만약 전용 40㎡이하 주택으로 이주를 거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참조) - 이 주택은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입주자 선 정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 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u>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u>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계약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증 완료 및 입주 안내 통보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시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구성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계약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계약한 사람은 입주시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취소됩니다.
기타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세대모형, 팜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계약한 자는 입주시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시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시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시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보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지구 및 단지 여건	※ 계약 전 지구 및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 여건 - 사업지구에 인접하여 군산역이 위치하고 지구북측으로 금강하굿둑, 동측으로 군산TG/군장대학교, 남측으로 군산시청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택지 및 주택개발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며 개발·실시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주변기반시설 등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사항, 현지여건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변경,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변경 및 공사여건 변경에 따라 추진일정 및 사업준공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 내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리츠활용·행복주택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본 단지는 군산역과 장항선철도에 인접하여 열차 통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군산신역세권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 후 인근 공동주택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공사차량 통행, 생활여건시설미비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국민임대 420호, 행복주택 400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 북측으로 완충녹지와 30m도로, 상업용지가 동측은 15m도로,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지가 단지 서측은 26m도로, 공동주택 단지 남측은 15m도로, 중학교와 근린공원이 설립 예정되어 있으며 공사 추진 과정 중에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노선 및 정류장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 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 중학교 설립 시 일부세대의 소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을 지나는 도로에 의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주변 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건물 및 시설,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인근 방문을 통하여 주변시설을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주변 건물 및 도로 여건과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19~20층 규모로 지붕은 평지붕입니다.
- 지붕은 전체동 평지붕으로 설치되고,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시공됩니다.
- 아파트 옥탑지붕에 위성안테나, 피뢰침, 전 동 아파트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701,702,704동의 1~3층의 일부에 주거약자를 위한 세대가 구성됩니다.
- 전 동 아파트 복도 외부면으로 창호가 설치됩니다.
- 복도창호 및 계단창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으며 복도에 면한 침실(이중창)에는 방충망이 설치됩니다. (방범창살 없음)
- 단지내 부대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사진,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사업계획내용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에 사업시행자의 로고 및 단지명칭이 표시될 예정이며,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경계의 담장은 일부구간 투시형 헨스가 설치됩니다.
- 단지 주출입구 이외에 도로접근을 위한 보행자출입구들이 배치될 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급배기구, DA(환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실대지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 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 지분 정리등에 따라 본 계약 건물의 단지배치도, 단지내 도로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등), 동·호수 별 위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

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임대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이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입니다.
- 단지 경계 녹지면에 단지 전기인입용 한전시설물(PAD S/W)이나 단지내 녹지면에 부대시설의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인접 동(701동, 704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저층 세대는 보안등 불빛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 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전후면에 식재되는 수목 등으로 인하여 저층 세대의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 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보안등 조명 등에 따라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 시공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급속1개소, 이동형4개소)되며, 이는 총 주차대수에 포함됩니다.
-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와 직접 연결된 주동 통합형으로 되어있습니다.
- 사업승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일부타입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저수조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사양은 층별 기준이 상이 합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도 및 엘리베이터 홀과 같은 공간은 공용부위이므로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701동 1~4호세대 복도에서 약4m 거리에 전기실, 발전기실 환기 및 배연설비 등을 위한 D/A가 설치되어, 다소의 소음 및 송풍, 배연에 의한 매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701동, 704동 6호세대 발코니 외부창호에서 우측 약1.5m 거리에 지하주차장 환기설비 등을 위한 D/A가 설치되어, 다소의 소음 및 송풍에 의한 매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트레이 등의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노출 시공됩니다.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은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식재(규격, 수종, 위치 등)및 시설물(재료, 형태, 위치 등) 시공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쓰레기수거함 2개소, 생활자원보관소 6개소, 자전거 보관대(9개소 135대)가 설치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 인근 지상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상가) 주차장으로 상가용도와 입주민용도로 별도의 구분·구획이 없으며, 차량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아파트 세대 내에는 별도의 실외기실 및 에어컨 냉매 매립배관 등이 없으며, 발코니 외부에 실외기 설치를 위한 구조체(바닥)가 형성됩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 천장, 벽체, 바닥에는 별도 마감이 없습니다.
- 주차장은 636대(지하주차장 291대, 지상주차장 342대, 근린생활시설 3대 포함)로 되어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중 지하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3m이며 내부 주차공간 높이 2.1m입니다.
-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도시가스 배관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시설, 지하주차장 환기탑, 자전거보관대, 쓰레기수거함, 장비반입구, 옥외계단실 등의 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1층에 주민공동시설 등이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 부출입구 인근 경비실에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팸플릿 상의 면적을 표현한 치수는 설계상의 위치 및 숫자로서 안목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우·오수, 전기분전반, 열분배기, 수도계량기 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에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PD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단지경계 녹지(701동 북서측 10호세대 측벽)에 단지 전기인입용 한전시설물(PAD S/W)이 설치 됩니다
- 단지 내 조경시설, 자전거보관소, 쓰레기수거함 등의 위치 및 수량은 공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 쓰레기수거함이 설치됨에 따라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특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야외시설(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사회적기업 등의 외부에 에어컨 및 냉·난방기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 구조, 규모, 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 지반현황 및 각종 평가, 심의 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 담장, 옹벽, 조경석 등은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에 따라 재질,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공용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및 단열재가 설치되어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 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동출입구, 엘리베이터 내부, 지하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옥외 보행자 출입통로 및 단지입구에 CCTV카메라가 설치됩니다.

■ 일반 사항

- 단지 내에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사회적기업 등이 설치되며, 내부시설(운동기구, 작업공간, 장비, 비품, 도서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 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질 수 있으며,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명칭, 동 표시, 아파트 문양, CI로고, 벽체 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발코니 태양광 모듈 전지판 설치 등은 낙하위험성 등으로 원칙적으로 설치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만약 설치시 시설물관리주체인 관리소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자를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세대는 입주 시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인해 층간, 세대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등록번호)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군산신역세권 A-2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418-82-06818)	일성건설(주) 외	-	(주)케이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외

8.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화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9.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33A, 46A 신청자만 해당)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 ~ 900룩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 ~ 400룩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입주 전까지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 입주 전까지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0.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심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 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 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 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부

팸플릿 배부처	LH 전북지역본부 4층 주거복지사업2부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LH 전북지역본부 마이홈센터 063)230-6162, 상담콜센터 063)230-6471,6472,6473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장 소		LH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교통편 : 61번 버스 호자5,6단지 앞 하차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1.10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